##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보윤·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95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6.

발 의 자:최보윤・서미화・이수진

김선교 • 서천호 • 윤종오

진종오 · 남인순 · 민형배

백혜련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유엔장애인권리협약(CRPD)에 따르면 당사국은 연령, 성별 등에 따라 복합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, 장애노인에 대한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보장하여야 함.

그런데 2022년 말 기준 국내 장애인구 중 고령화율이 52.8%로 조사되는 등 장애인 중 노인의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, 법적으로 고령장애인의 연령 기준이나 장애노인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장애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.

이에 현행법에 장애노인을 정의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이 장애·성별 등으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. 국내법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준 수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조의2제1호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"노인"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.
- 1의2. "장애노인"이란 노인 중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자를 말한다.

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, 성별,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조의2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	제1조의2(정의)		
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		
<u>&lt;신 설&gt;</u>	<u>1. "노인"이란 65세 이상인 자</u>		
	<u>를 말한다.</u>		
<u>&lt;신 설&gt;</u>	1의2. "장애노인"이란 노인 중		
	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		
	받는 장애인인 자를 말한다.		
<u>1.</u> (생 략)	<u>1의3.</u> (현행 제1호와 같음)		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		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	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		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		
	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,		
	<u>성별,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</u>		
	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		
	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		
	추진하여야 한다.		